

속초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외안	162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3. 5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계 안 사 유

-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과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전산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그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 주 요 골 자

- 대불금의 분할상환금 조정 (안 제7조 참조)

10만원 미만 3회, 10만원 ~ 30만원 미만 8회, 30만원 이상 12 회

- 결손처분조항 신설 : 행방불명자, 시효소멸완성등 (안 제7조의2 참조)

3. 참 고 사 항

- 강권 법무 02124 ~ 98 ('93.3 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첨

- 입 법 예 고 ————— '93. 4. 8 - '93. 4. 28
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사회과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시의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	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① ----- 제21조의 ----- ----- ----- -----
제6조(지출)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,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.	제6조(지출) ① ----- -----의 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----- ----- 진료비 청구명 세서를 ----- ----- 결정, 의료보호 대 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7조(대불금의 상환등)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	제7조(대불금의 상환등) ① ----- ----- ----- 대불한

현행	개정안
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. 1. 10만원 미만은 4회 2.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3. 2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6개월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,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. 제7조의 2(결손처분) 신설	날부터 ----- ----- ----- ----- 1. 10만원 미만은 3회 2.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.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----- ----- ----- ----- 6월내의 ----- ----- ----- ----- 제7조의2(결손처분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	1.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수 없게 된 때 2.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.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(읍 면 동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겸손처분을 결정한때에 한한다)